

새로이 개정된 선박 교통 규칙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항칙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개정 경위>

최근의 해난 발생 상황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보급 등 해상 교통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 해역 특성에 따른 새로운 항법 설정
- 선박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신설

등에 대해 정한 “항칙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9년 7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해상 교통 규칙이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10년 7월 1일(항로와 수로를 통항하기 위한 사전 통보에 관한 개정 규정의 일부는 2010년 6월 1일(13, 14쪽 참조), 도쿄오키 등부표 부근 해역에서의 경로 지정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일(7쪽 참조))부터 시행되므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1-2
- 항로 외에서의 대기 지시 3-4
- 쿠루시마해협 항로에서의 항법 5-6
- 항로 외 해역에서의 항법(경로 지정) 7-10
- AIS를 활용한 진로 알림 조치 11-12
- 항로 통보 대상 선박(항로 입항 시각 등에 관한 지시 대상 선박)의 확대 13
- AIS를 활용한 항내 수로에서의 효율적인 교통 정리 14
- 해상의 이상 기상 시의 항내 안전 대책 14

해상보안청



사랑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일본의 바다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주)특정선박
정보 청취 의무 해역을 항행하는 다음 선박
• 길이 50미터 이상 선박 (간몬해협은 제외)
• 총톤수가 300톤을 넘는 선박 (간몬해협만)

지금까지도 해상보안청에서는 선박
통항이 혼잡한 해역에
해상교통센터를 설치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통신 기기를 체크합니다!

항칙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상보안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청취가 의무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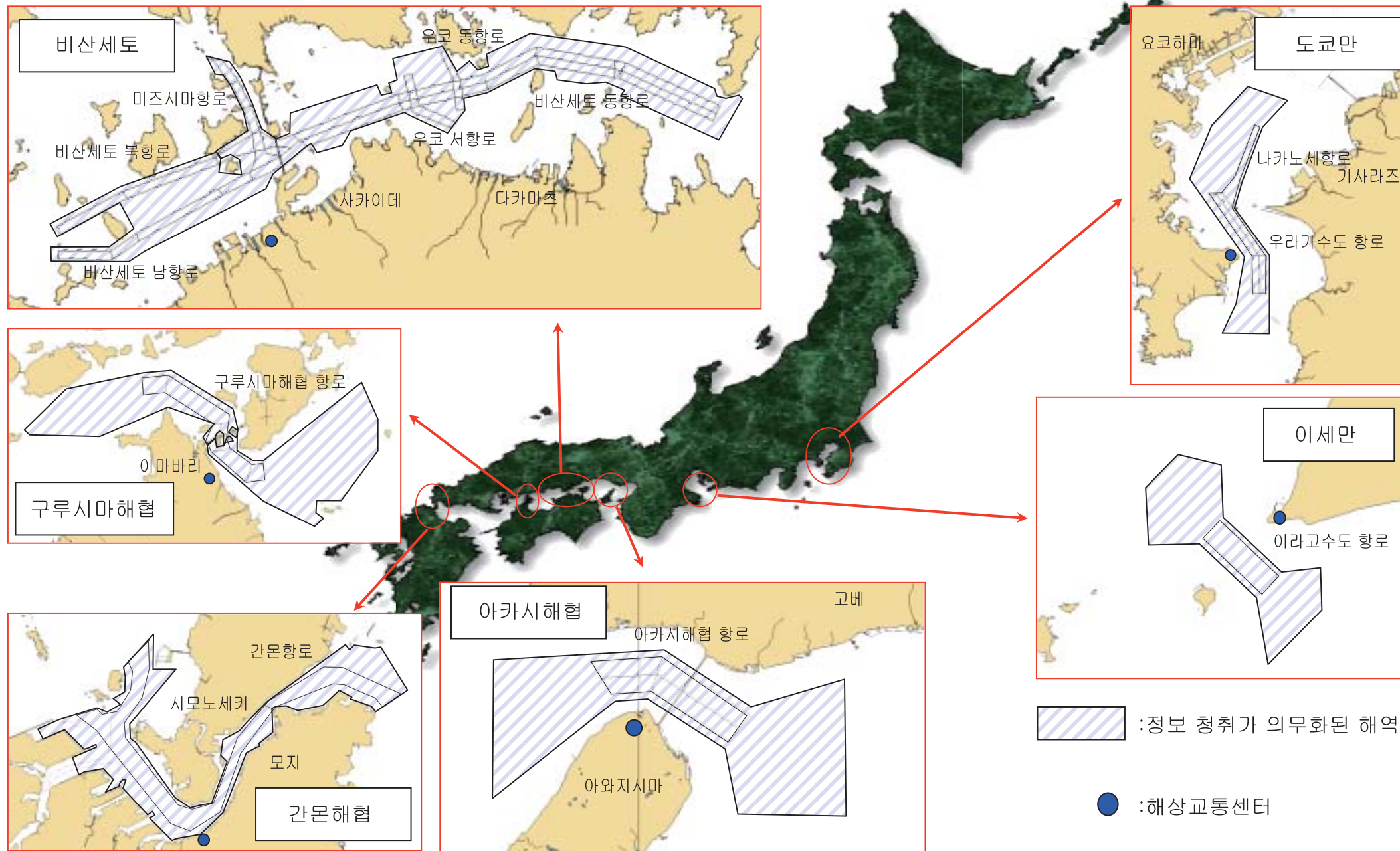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과 권고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하며 주로 국제 VHF 무선전화를 이용해 실시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전화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권고는 선박 운항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선박 운항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청취 의무 해역>



이 해역을 항행하려는 **특정 선박(주)**은
해상보안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청취하여**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항행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정보>

- 교통 방법에 관한 정보
- 교통 장애 발생에 관한 정보
- 위험 해역에 관한 정보
- 조종 성능이 제한된 선박 항행에 관한 정보
-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 다른 특정 선박의 동향에 관한 정보
- 기타 항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항로외 대기 지시

도쿄만, 이세만, 세토나이카이에 설정된 항로에서는 안개로 시계가 나빠졌을 때 등에 항로 내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 항로 밖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항구에서도 같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항로별 항로 외 대기 지시의 기준 및 대상 선박>

	시계 제한 시의 기준 및 대상 선박		기타
	시정 200미터 이하인 경우	시정 1000미터 이하인 경우	
우라가수도 항로 나카노세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선(※1) • 특별 위험물 적재선(※2) • 긴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 총톤수 1만 톤 이상인 위험물 적재선(특별 위험물 적재선 제외) 	
이리고수도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선 • 특별 위험물 적재선 •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톤수 1만 톤 이상인 위험물 적재선(특별 위험물 적재선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30m 이상 200m 미만의 선박이 거대선과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아카시해협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선 • 특별 위험물 적재선 •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 위험물 적재선(특별 위험물 적재선 제외) • 160m 이상 200m 미만 예인선 등 	
비산세토 동항로 우코 동항로 우코 서항로 비산세토 북항로 비산세토 남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선 • 특별 위험물 적재선 •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 위험물 적재선(특별 위험물 적재선 제외) 	
미즈시마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선 • 특별 위험물 적재선 •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 위험물 적재선(특별 위험물 적재선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70m 이상 200m 미만의 선박이 거대선과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루시마해협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선 • 특별 위험물 적재선 •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 위험물 적재선(특별 위험물 적재선 제외) • 100m 이상 200m 미만 예인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의 속력을 넘어서 4노트 이상 속력을 확보할 수 없는 선박(자세한 내용은 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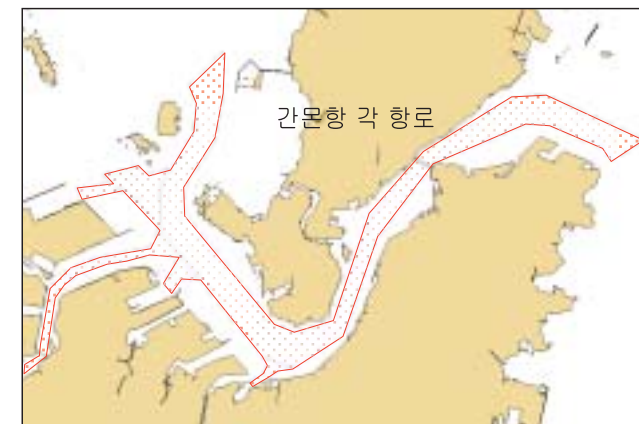
※1 길이 200m 이상인 선박
 ※2 특별 위험물 적재선: 총톤수 5만 톤(적재한 위험물이 액화가스일 경우에는 총톤수 2만 5천 톤) 이상의 위험물 적재선
 ※3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 예인 시 예인선의 선수부터 비예인 물건의 뒤단 또는 푸시맨 운반 시 선미부터 물건의 전단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인 선박, 뗏목 기타 물건을 당기거나 밀면서 항행하는 선박
 ※4 이리고수도 항로에서는 대형선 혹은 길이 130m 이상 200m 미만인 선박 중 한쪽이 위험물 적재선인 경우 또는 어업 활동 등으로 인해 항로의 가행폭이 대략 2/3 이하로 감소된 경우 등에는 항로 외 대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항칙법>

<항로별 항로 외 대기 지시의 기준 및 대상 선박>

	시계 제한 시의 기준 및 대상 선박	기타
	시정 500미터 이하인 경우	
센다이 시오가마항 시오가마구의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간몬항 각 항로 (히비키항로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의 속력을 넘어서 3노트 이상의 속력을 확보할 수 없는 선박

<간몬항>



<센다이 시오가마항>



※대기 지시는 해상교통센터 또는 해상보안청이에서 주로 국제 VHF 무선전화로 호출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전화나 신호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구루시마해협 항로에서의 항법



항해의 난소인 구루시마해협에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월금지구간** 및 **최저속력** 을 설정합니다.

①~③은 항로 항행 선박이 대상입니다.
④는 전류(轉流) 1시간 전부터 전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항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이 대상입니다.

<①추월 금지>



구루시마해협 항로에서 좁고 구부러진 구간이 **추월금지구간**이 되었습니다.

구루시마해협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선박을 제외한 다른 선박을 추월하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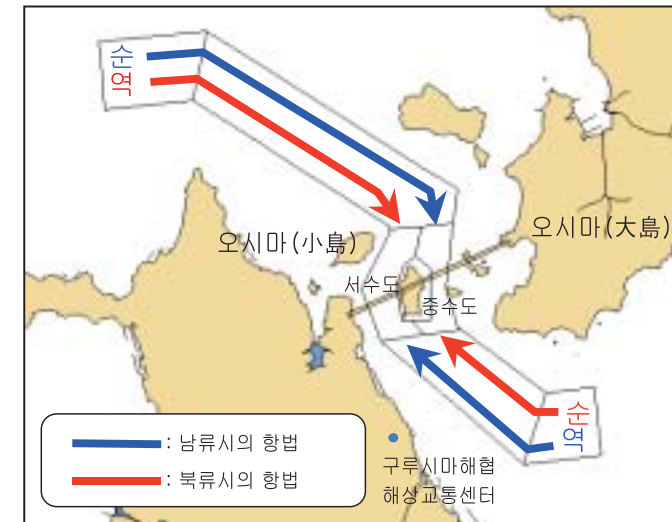


- ①조업 중인 선박
- ②허가를 받아 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③긴급 용무를 하기 위해 속도가 느린 선박
- ④대지 속력 4노트를 확보하지 못하는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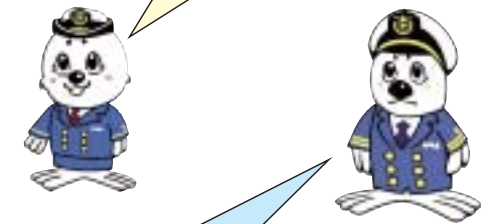
단 해난을 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좁고 구부러진 해역에서의 무리한 추월은 매우 위험합니다!

<③전류(轉流) 전후의 항법 지시>



조류의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하는 수도가 다른 "순중역서(順中逆西)"의 항법.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전류(轉流) 전후에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개별적으로 항법을 지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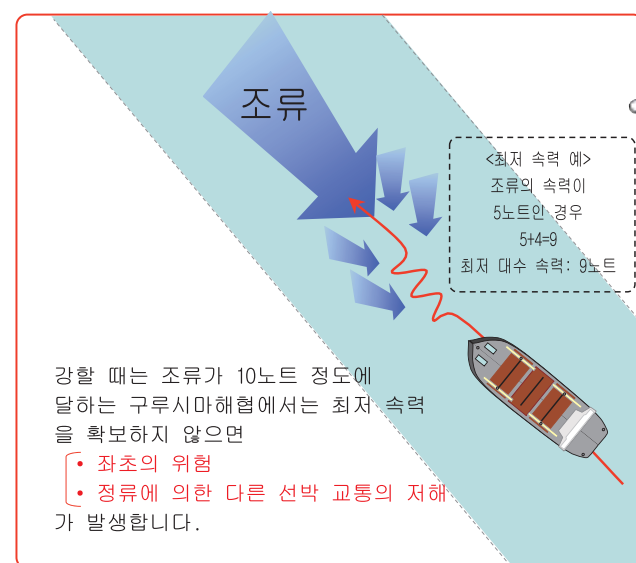


해상교통센터가 주로 국제 VHF 무선전화로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이 연락을 위해 선박측에서도 정보를 청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의 지시 내용은 항행할 수도(서수도 항행인지 중수도 항행인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선박 운항(조타 각도나 기관 조작 등)에 관해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루시마해협을 항행할 때는 부근에 있는 소형 선박의 움직임에도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②최저 속력 확보>



최저 속력은 **조류의 속력을 넘어서 4노트의 속력**입니다.

※최저 속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항로 외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쪽 참조.

※구루시마해협의 조류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6.kaiho.mlit.go.jp/kurushima/>

<④항로 진입 전의 통보 의무화>



③의 항법 지시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전류 1시간 전부터 전류 시작 전까지 항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위치통보라인을 통과할 때 해상교통센터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내용은
• 선명
• 해상보안청과의 연락 수단
• 항행 속력
• 항로 진입 예정 시각
입니다.



○항로 외 해역에서의 항법(경로 지정 1/2)

각각 대상 선박을 가리킵니다



항로 이외의 해역에서도 선박 교통을 정류할 필요가 있는 해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역에서의 항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이 항행해야 하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항로”에서 적용되는 선박간의 피항 관계 등 특별한 교통 규칙이 적용되는 해역은 아닙니다만, 선박 교통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입니다. 경로에 따른 안전 항행을 부탁드립니다.

선박의 활동 목적 등에 따라 경로를 따르지 않고 소형 선박(조업 어선 등)이 항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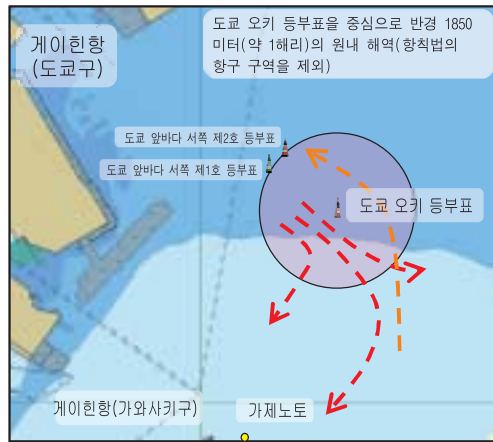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해역에서의 선박간 피항 관계는 해상 충돌 예방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단 경로를 위반한 항행도 항법 위반으로 처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에 따른 안전 항행을 부탁드립니다.

[도쿄 오키 등부표 부근 해역]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른쪽 그림 원 안의 해역을 항행하려는 선박

도쿄 오키 등부표가 설치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850미터(약 1해리)의 원내 해역(항칙법의 항구 구역을 제외)을 통과해 항행하려는 선박은 이 지점을 좌현으로 보면서 항행할 것



[도쿄만 아쿠아라인 동수로 부근 해역]

도쿄만 아쿠아라인 동수로를 항행하려는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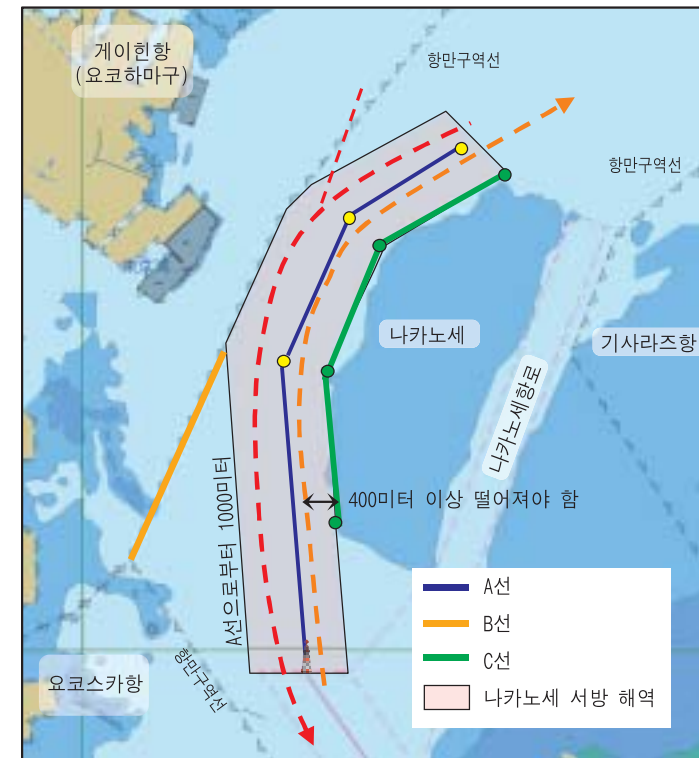
- 도쿄만 아쿠아라인 동수로를 남쪽 방향으로 통과 항행하려는 선박은
 - A선의 서쪽 해역을 항행할 것
 - 치바 방면으로부터 항행할 때는 A선에 접근해 항행할 것
 - 도쿄 방면으로부터 항행할 때는 A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할 것
- 도쿄만 아쿠아라인 동수로를 북쪽 방향으로 통과 항행하려는 선박은
 - A선의 동쪽 해역을 항행할 것
 - 치바 방면을 향해 항행할 때는 A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할 것
 - 도쿄 방면을 향해 항행할 때는 A선에 접근해 항행할 것



[기사라즈항 오키 등부표 부근 해역]

기사라즈항을 출항하려는 선박

A선을 가로지른 후 B선을 횡단해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사라즈항 오키 등부표가 설치된 지점을 좌현으로 보면서 항행할 것



[나카노세 서방 해역]

나카노세 서방 해역을 항행하려는 선박

- 나카노세 서방 해역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A선의 서측 해역을 항행할 것
- 나카노세 서방 해역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B선을 횡단해서 항행하여 B선의 서측 해역을 향해 항행하려는 선박은 제외)은
 - 목적항의 항만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침로를 바꾸기 전까지 A선의 동측 해역을 항행할 것
 - 흘수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C선에서 나카노세 서방 해역 내측으로 400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을 항행할 것

[이리고수도 항로 출입구 부근 해역]

항로를 항행하려는 선박

- 이리고수도 항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항행하려는 선박은
 - A선의 서측 해역을 항행할 것
 - c선을 횡단해서 항행할 것
- 이리고수도 항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항행한 선박은
 - B선의 서측 해역을 항행할 것
 - d선을 횡단해서 항행할 것
- 이리고수도 항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하려는 선박은
 - B선의 동측 해역을 항행할 것
 - e선을 횡단해서 항행할 것
- 이리고수도 항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한 선박은
 - A선의 동측 해역을 항행할 것
 - f선을 횡단해서 항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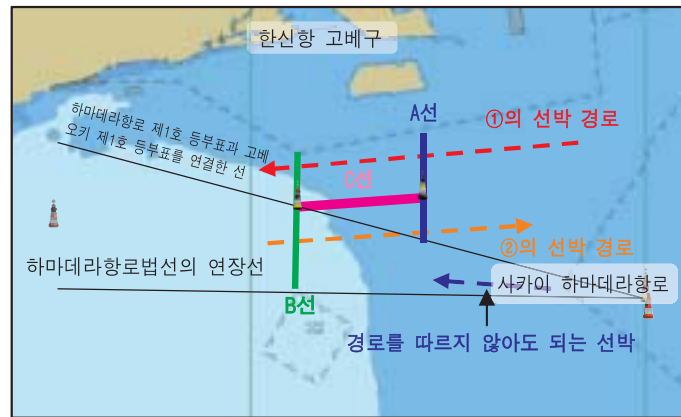
○항로 외 해역에서의 항법(경로 지정 2/2)

각각 대상 선박을 가리킵니다

[오사카만 북부 해역]

총톤수 500톤 이상인의 선박

- ① A 선을 가로지른 후 B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총톤수 500톤 이상인의 선박은 C 선의 북측 해역을 항행할 것
- ② B 선을 가로지른 후 A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총톤수 500톤 이상인의 선박은 C 선의 남측 해역을 항행할 것



[스모토 앞바다 부표등 및 유라세토 부근 해역]

도모가시마수도를 항행하려는 선

<스모토 오키 등부표 부근 해역>

A 선 및 B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선박

<유라세토 부근 해역>

B 선 및 C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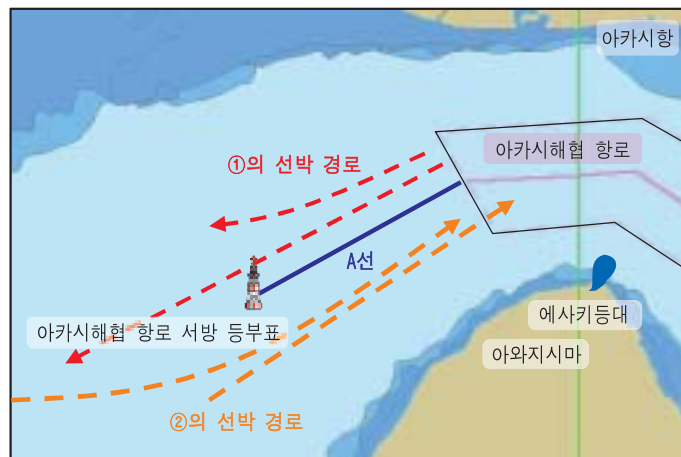
- ① A 선을 횡단해서 항행한 후 B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선박 또는 B 선을 가로지른 후 A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선박은 스모토 오키 등부표가 설치된 지점을 좌현으로 보고 항행할 것
- ② C 선을 횡단한 후 B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선박은
 - D 선의 서측 해역을 항행할 것
 - D 선으로부터 서쪽으로 150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을 항행할 것
- ③ B 선을 횡단한 후 C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려는 선박은
 - D 선의 동측 해역을 항행할 것
 - D 선으로부터 동쪽으로 150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을 항행할 것



[아카시해협 항로 서측 출입구 부근 해역]

총톤수 5,000톤 이상인의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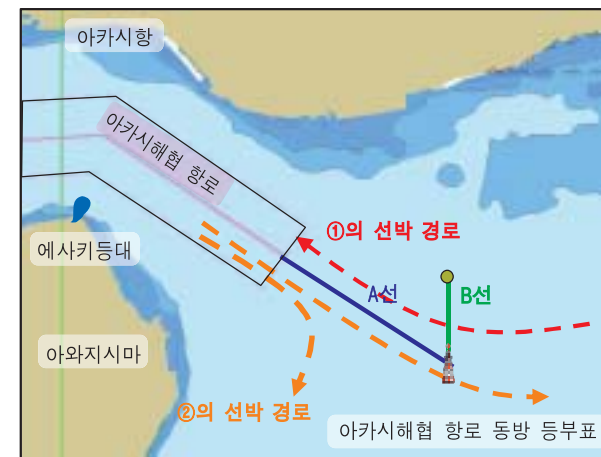
- ① 아카시해협 항로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항행한 총톤수 5,000톤 이상인 선박은 A 선의 북측 해역을 항행할 것
- ② 아카시해협 항로를 따라 동쪽 방향으로 항행하려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인 선박은 A 선의 남측 해역을 항행할 것



[아카시해협 항로 동측 출입구 부근 해역]

길이 50미터 이상인 선박

- ① 아카시해협 항로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항행하려는 길이 50미터 이상인 선박은
 - A 선의 북측 해역을 항행할 것
 - B 선을 횡단해서 항행할 것
- ② 아카시해협 항로를 따라 동쪽 방향으로 항행한 길이 50미터 이상인 선박은
 - A 선의 남측 해역을 항행할 것
 - 아카시해협 항로 동방 등부표가 설치된 지점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을 항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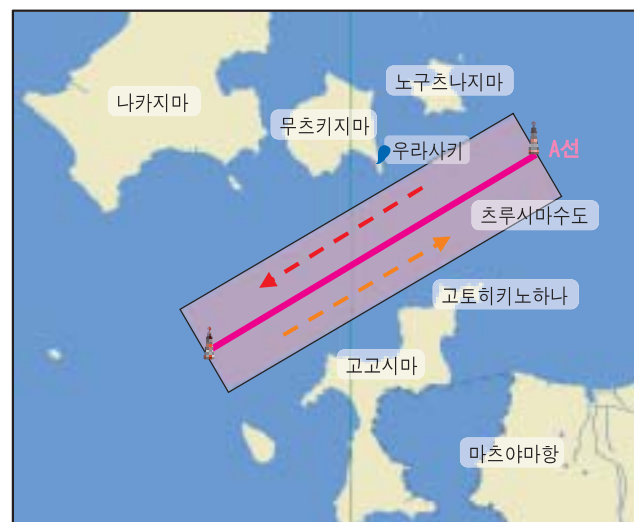


B 선=아카시해협 항로 동방 등부표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200미터 지점에서 2,300미터 지점까지 그은 선

[츠루시마수도 부근 해역]

츠루시마수도를 항행하려는 선박

- ① 츠루시마수도를 따라 동쪽 방향으로 항행하려는 선박은 A 선의 남측 해역을 항행할 것
- ② 츠루시마수도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항행하려는 선박은 A 선의 북측 해역을 항행할 것



[온도세토 부근 해역]

총톤수 5톤 이상인 선박

- ① A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였거나 또는 항행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인 선박은 온도세토 북측 등부표가 설치된 지점을 좌현으로 보면서 항행할 것
- ② B 선을 횡단해서 항행하였거나 또는 항행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인 선박은 온도세토 남측 등부표가 설치된 지점을 좌현으로 보면서 항행할 것



○ AIS를 활용한 진로 알림 조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목적지에 관한 정보” 입력에 대해,

①국제해사기관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 방법이 규정됩니다.

②규정된 입력 방법에 따른 입력이 의무화됩니다.

<대상 선박>

AIS를 탑재한 선박(선원법에 따라 작동 의무가 면제된 선박은 제외)



목적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관(IMO)에서 목적항의 국가명과 항구명을 가리키는 다섯자리의 알파벳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입력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입력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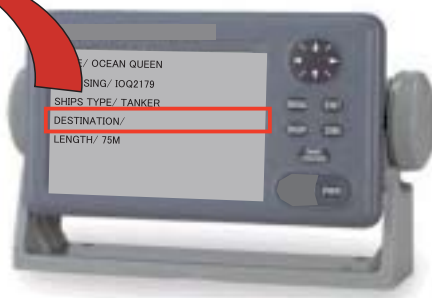
선박자동식별장치의 목적지 정보란

> ○○ _ ○○○ _ ○○ / ○○○
 ① ② ③

- ① 목적항을 가리키는 기호(국가를 가리키는 기호와 항구를 가리키는 기호의 편성)
- ② 항내에서의 진로를 나타내는 기호(계류 위치 등을 가리킵니다)
- ③ 기타 필요한 정보를 가리키는 기호(통과하려는 경로 등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형식에 따라 입력해 주십시오.
 “>”, “/”, “_” (스페이스·공백) 등도 잊지 마시고 입력 해주십시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IS정보 입력과 항내·항로에서의 기류(깃발) 신호에 의한 진로 표시는 양쪽 다 해 주십시오.

AIS의 입력으로 알 수 있는 것!!

- 다른 선박이 어느 항구를 향해 항행하고 있는지!
- 다른 선박이 항내에서 어느 계류 시설을 향해 항행하고 있는지!
- 다른 선박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 항행하는지!

이와 같이 AIS를 탑재한 선박 간에는 상호 상대 선박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충돌 방지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 항행 중에 입력하려고 하면 주위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출항 전 등 가급적 조기 입력해 주십시오.**

목적항의 입력 규칙

- ※ 목적항이 일본의 항구(항칙법 적용항)인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로 정하는 항구를 가리키는 기호를 입력
- ※ 외국 항구 등이 목적항일 경우에는 유엔 L0코드를 입력(예: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US SFO”)
- ※ 목적항에 유엔 L0코드가 없을 경우 또는 목적항의 유엔 L0코드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 뒤에 일반적인 영어 명칭 등을 입력.
- ※ 목적항의 항구명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유엔 L0코드 대신 “?? ???”를 입력

주의 AIS의 입력 오류 사례가 많습니다. AIS의 입력 오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 상호 간 및 선박과 육상 항행 원조 시설 간에 이 하 3 종류의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입니다. 500톤 이상인 내항 화물선 등이 탑재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입력 예>

[예 1]

하카타항을 목적항으로 하고 하카타항 내에서는 제2구의 계류 시설로 향하려는 선박. 도중에 간몬항 서쪽의 무츠레지마 동쪽을 향해 간몬항을 통과.

> JP _ HKT _ E2 / WM
 ① ② ③

- ① 목적항이 하카타항(JP HKT)
- ② 목적항 내에서는 제2구의 계류 시설로(E2)
- ③ 도중에 간몬항을 서쪽으로 통과해 무츠레지마 동쪽에서 출역(WM)

②는 현재 항내에서의 진로를 가리키는 기류(깃발)신호기에 의한 신호중 대표기를 제외한 기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하는 신호는 해상보안청이 제공하는 리플렛(주의)이나 HP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 2]

나고야항을 목적항으로 하고 입항 전에 항구 경계 부근에서 묘박하려는 선박.

> JP _ NGO _ OFF
 ① ②

- ① 목적항이 나고야항(JP NGO)
- ② 입항 전에 항구 경계 부근에서 묘박(OFF)

[예 3]

게이힌항(요코하마구)을 목적항으로 하고 게이힌항(요코하마구) 내에서는 제3구의 JFE 스틸 동일본제철소 안벽으로 향하는데 로증 에 도쿄만 내의 나카노세 해역에서 묘박하려는 선박.

> JP _ YOK _ K / NNX
 ① ② ③

- ① 목적항이 요코하마항(JP YOK)
- ② 목적항 내에서는 제3구의 JFE스틸 동일본제철소 안벽으로(K)
- ③ 도중에 도쿄만의 나카노세 해역에서 묘박(NNX)

<리플렛 예>

적용항의 항구 코드 일람표 (예)

항구명	항구명 지역명	코드
하카타 (후쿠오카현)	HAKATA FUKUOKA	JP HKT
나고야 (아이치현)	NAGOYA AICHI	JP NGO
게이힌 요코하마구 (도쿄·가나가와현)	KEIHIN YOKOHAMAKU TOKYO·KANAGAWA	JP YOK

통과하려는 경로를 가리키는 코드 (예)

경유 진로	코드
서쪽 무츠레지마 동쪽 방향을 향해 항행하고 간몬항(히비키신코, 신모지구를 제외)을 통과 또는 출항함	WM
다음 목적항으로 향하는 도중에 도쿄만 나카노세 해역에서 묘박하려는 경우	NNX

(주의) 별도로 일본의 적용 항구 전체의 항구 코드가 기재된 리플렛을 작성합니다.

○항로 통보 대상 선박

(항로 입항 시각 등에 관한 지시 대상 선박)의 확대

최근 선박의 대형화로 항로 내의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로 통보 대상 선박을 늘려 항로로 진입하는 간격 등을 조정함으로써 항로 내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통보 선박과 지시 대상 선박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통보를 하지 않고 항로를 항행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개요>

- 지금까지도 선박 교통이 집중되는 항로 내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항로를 항행할 예정인 거대선(길이 200미터 이상 선박)이나 위험물 적재선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항로 통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항로로 입항하는 시각을 지시해 입항 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 최근에는 선박의 대형화로 항로 내의 혼잡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많은 선박에 대해 통보를 요청해 진입 간격의 조정 등 안전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항로 통보의 대상 선박(항로 진입 시각 등 지시 대상 선박)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항로 통보 대상이 되어 항로를 항행할 예정인 선박도 2010년 6월 1일부터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보를 잊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통보 시기 및 대상 선박>

거대선 등 지금까지의 통보 대상 선박과 향후 새로이 추가되는 통보 대상 선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로 진입 예정일 전날 정오까지 통보 대상 선박		항로 진입 예정 시각 3시간 전까지 통보 대상 선박	
	현재 대상 선박	새로 추가되는 대상 선박	현재 대상 선박	새로 추가되는 대상 선박
우라가수도 항로 나카노세항로 비산세토 동항로 우코 동항로 우코 서항로 비산세토 북항로 비산세토 남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선 · 적재하고 있는 위험물이 액화가스인 총톤수 2만 5천 톤 이상인 위험물 적재선 ·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적재선(대형선, 적재하고 있는 위험물이 액화가스인 총톤수 2만 5천 톤 이상의 위험물 적재 선박 또는 주로 선박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의 선박을 제외) 	-
이라고수도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30m 이상 200m 미만 선박 		
아카시해협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 160m 이상 200m 미만 예인선 등 		
구루시마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 100m 이상 200m 미만 예인선 등) 		
미즈시마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160m 이상 200m 미만 선박 		

*1 긴 물건을 예인하는 예인선 등: 예인 시 예인선의 선수부터 비에인 물건의 뒤단 또는 푸시맨 운반 시 선미부터 물건의 전단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인 선박, 뗏목 기타 물건을 당기거나 밀면서 항행하는 선박

○AIS를 활용한 항내 수로에서의 효율적인 교통 정리

<개정 개요>

1. 항내의 일정 수로를 항행하려고 할 때의 **사전 통보 사항**으로 항로 항행 예정 시각 외에 **“선박 명칭”, “선박 총톤수·길이”, “선박과 항장(港長) 간의 연락 수단”, “정박할 계류 시설”이 추가**됩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수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통보 사항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많은 선박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탑재하기 때문에 AIS에 의한 선박 “길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관제선박이 관제 수로를 항행하는 경우라도 지금까지처럼 대항하는 선박(관제 대상 선박)의 항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대항하는 선박 길이에 맞추어 일정한 길이 이하의 관제 대상 선박은 항행을 인정하는등 효율적인 교통 정리를 실시합니다.
새로이 항내 교통 정리를 실시하는 항구에서는 항내 교통 관제의 기준 및 운용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기준
관제선박 및 관제 대상 선박의 기준이 “총톤수”에서 “길이(전장)”로 변경됩니다.
(각 항구의 “관제선박” (i) 및 “관제 대상 선박” (ii)의 기준은 아래를 참조)
 - 운용 방법
선박 길이(전장)에 맞추어 일정 조건 하에 항만 관리소장이 인정한 관제 대상 선박은 출항 신호(○)시라도 입항 또는 입항 신호(1)시라도 출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대상 항만
 - ①가고시마항 가고시마수로
 - (i) **길이 190미터 이상**(유송선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 (ii) **길이 70미터 이상** 선박(총톤수 1000톤 미만을 제외)
 - ②치바항 치바항로
 - (i) **길이 140미터 이상**(유송선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 (ii) **길이 50미터 이상** 선박(총톤수 500톤 미만을 제외)
 - ③치바항 이치하라항로
 - (i) **길이 125미터 이상**
(유송선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 (ii) **길이 50미터 이상** 선박
(총톤수 500톤 미만을 제외)
 - ④게이힌항 요코하마구 요코하마항로
 - (i) **길이 160미터 이상**
(유송선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 (ii) **길이 50미터 이상** 선박
(총톤수 500톤 미만을 제외)



※항후 게이힌항 도쿄구나 나고야항 등에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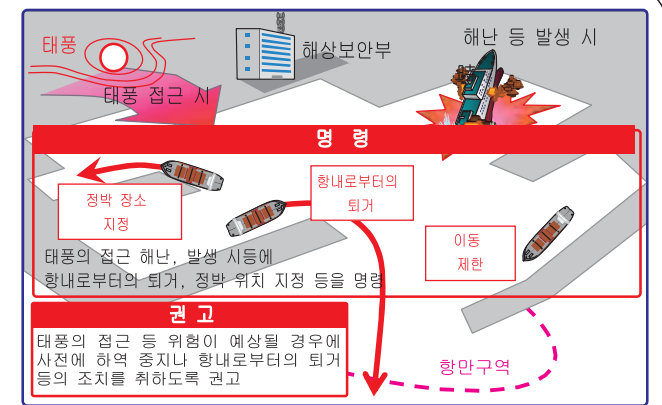
○해상의 이상 기상 시의 항내 안전 대책

<개정 개요>

대형 태풍이나 해일 등 해상의 이상 기상 시 또는 해난 등 발생 시에는 항내에 있는 선박 등에 대해 항내로부터의 퇴거 명령, 피난 권고 등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항칙법이 적용되는 전국의 항구가 대상입니다.



[각 관구 해상보안본부의 연락처]

- 제1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047-8560 홋카이도 오타루시 미나토마치 5-3
TEL: 0134-27-0118
URL: <http://www.kaiho.mlit.go.jp/01kanku/>
- 제2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985-8507 미야기현 시오가마시 데이잔도리 3-4-1
TEL: 022-363-0111
URL: <http://www.kaiho.mlit.go.jp/02kanku/>
-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231-8818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5-57
TEL: 045-211-1118
URL: <http://www.kaiho.mlit.go.jp/03kanku/>
- 제4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455-8528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이리후네 2-3-12
TEL: 052-661-1611
URL: <http://www.kaiho.mlit.go.jp/04kanku/>
- 제5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650-8551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하토바초 1-1
TEL: 078-391-6551
URL: <http://www.kaiho.mlit.go.jp/05kanku/>
- 제6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734-8560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미나마구 우지나해안 3-10-17
TEL: 082-251-5111
URL: <http://www.kaiho.mlit.go.jp/06kanku/>
-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801-8507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모지구 서해안 1-3-10
TEL: 093-321-2931
URL: <http://www.kaiho.mlit.go.jp/07kanku/>
-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624-8686 교토부 마이즈루시 아자시모후쿠이 901
TEL: 0773-76-4100
URL: <http://www.kaiho.mlit.go.jp/08kanku/>
-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950-8548 니가타현 니가타시 주오구 반다이 2-2-1
TEL: 025-245-0118
URL: <http://www.kaiho.mlit.go.jp/09kanku/>
-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890-8510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히가시코리모토초 4-1
TEL: 099-250-9800
URL: <http://www.kaiho.mlit.go.jp/10kanku/>
-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우편번호 900-8547 오키나와현 나하시 미나토마치 2-11-1
TEL: 098-867-0118
URL: <http://www.kaiho.mlit.go.jp/11kanku/>

[각 해상교통센터의 연락처]

- 도쿄만 해상교통센터
우편번호 239-0813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가모이 4-1195
TEL: 046-842-0118
URL: <http://www6.kaiho.mlit.go.jp/tokyowan/>
- 이세만 해상교통센터
우편번호 441-3624 아이치현 다하라시 이라고초 후루야마 2814-33
TEL: 0531-34-2700
URL: <http://www6.kaiho.mlit.go.jp/isewan/>
- 나고야항 해상교통센터
우편번호 455-0848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긴조부두 3-1
TEL: 052-398-0711
URL: <http://www6.kaiho.mlit.go.jp/nagoyako/>
- 오사카만 해상교통센터
우편번호 656-1725 효고현 아와지시 노지마에자키 914-2
TEL: 0799-82-3050
URL: <http://www6.kaiho.mlit.go.jp/osakawan/>
- 비산세토 해상교통센터
우편번호 769-0200 가가와현 아야우타군 우타즈초 아오노야마 3810-2
TEL: 0877-49-3366
URL: <http://www6.kaiho.mlit.go.jp/bisan/index.htm>
- 구루시마해협 해상교통센터
우편번호 794-0003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미나토초 2-5-100
TEL: 0898-31-4992
URL: <http://www6.kaiho.mlit.go.jp/kurusima/>
- 간몬해협 해상교통센터
우편번호 800-0064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모지구 마츠바라 2-10-11
TEL: 093-381-6699
URL: <http://www6.kaiho.mlit.go.jp/kanmon/index.htm>

바다에서는
착용하자 구명조끼
휴대하자 휴대전화
바다에서 유사시에는 118번

